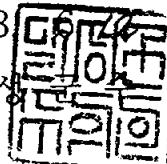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
------------	----

제출일자 : 2003

제출자 : 달성군



1. 개정이유

표준정원제가 시행됨에 따라 고시된 정수 범위내에서 집행부의 정원 일부를 증원하여 신규 준공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적정인력을 책정하여 지원하고, 업무량에 비해 인력이 절대부족한 일부 부서에 대하여 추가 인력지원 등으로 대민봉사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개정근거

- 표준정원제 시행 등 기구정원규정시행규칙중개정규칙 시행지침
[자제12200-247(2003. 5. 9)]

3. 주요골자

-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 정원을 “603”을 “611”로 함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을 “593”을 “601”로 함 (제2조 제1호)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 없음
- 예산수반 사항 : 없음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호외의 부분중 “603”을 “611”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593”을 “601”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603명</u>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593명</u></p> <p>2. (생략)</p>	<p>제2조(정원의 총수) ----- ----- <u>611명</u> ----- -----</p> <p>1. ----- : <u>601명</u></p> <p>2. (현행과 같음)</p>